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(2019-4호)

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보고

2019. 1. 16.

보건복지부
국민연금공단

목 차

Ⅰ.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·····

Ⅱ.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·····

Ⅲ. 소송 제기 ·····

Ⅳ. 공시 및 보고 ·····

요 약

□ (**기본방향**) 투자대상 기업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

□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

구분	중점관리사안	예상하지 못한 우려
목적	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	
행사 내용	해당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	해당 우려에 대한 개선 요구
기업과의 대화	▪ **(대상)** 지분율 5% 이상 또는 보유비중 1%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▪ **(내용)**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,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수립 유도 * 비공개 원칙,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을 시 공개서한 발송	▪ **(대상)** 컨트러버셜 이슈* 중대성 평가와 ESG등급 정성평가를 실시 후, 투자위원회에서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기업 *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를 총칭 ▪ **(내용)**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,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계획 및 개선대책 수립 유도 * 비공개 원칙,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을 시 공개서한 발송
비공개,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	▪ **(대상)**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, 개선이 없는 기업 ▪ **(내용)**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유도 * 비공개 원칙, 지정 후 연도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,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상 명단 공개여부 결정	해당 없음

구분	중점관리사안	예상하지 못한 우려
경영참여 (주주제안)	▪ **(대상)**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, 개선이 없는 기업 ▪ **(내용)**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선여부 검토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 결정 *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관련 공개 중점관리기업에 한하여,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결로 다른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에 참여하거나, 직접 주주제안 가능	▪ **(대상)**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, 개선이 없는 기업 ▪ **(내용)**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,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 결정

<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>

구분	세부내역
기업의 배당정책 수립	- '①**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기업**, ②**의결권행사 대상기업 중 배당성향 하위 기업**, ③**보유비중 상위 기업**으로, - **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·공개하고 있지 않거나,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***을 선정 * 당기순손실(결손 누적 포함),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기업을 제외 - **합리적인 배당정책 여부**는 **'배당정책 체크리스트'***를 기반으로 판단 * 배당정책의 투명성, 구체성, 일관성을 검토
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	-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으로서, -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, **이사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**을 고려하여 **선정**
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	- 국가기관의 조사 등 **객관적 사실에 근거**하여 ①**횡령**·②**배임**, ③**부당지원행위**, ④**경영진의 사익편취**에 해당할 **우려**로 인해 -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
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	- **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(위원) 선임의 건** 중에서 **동일한 사유 등**으로 **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**한 기업 중, -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, 안건의 중요도, 개선여지, 보유비중 등을 고려하여 **선정**

□ 소송제기

구분	주주대표소송	손해배상소송
목적	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	
소송 내용	▪ **(대상)** 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 ▪ **(내용)**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,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 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 소제기	▪ **(대상)** 기금 투자대상 자산(주식, 채권, 부동산 등)과 관련하여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 ▪ **(내용)** 법률상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투자자 소송 및 투자자(주주, 채권자 등)로서 추궁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제기
소제기 검토	▪ **(검토사항)** 제소요건, 승소가능성, 소송실익, 위반행위, 손해액 등을 고려 ▪ **(타주주 요청)** 제소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소송 제기 여부 검토 ▪ **(외부자문)**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승소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며, 법무법인은 준법지원실, 기타 자문기관은 수탁자책임실이 주관하여 선정	▪ **(검토사항)** 제소요건, 승소가능성, 소송실익, 위반행위, 손해액 등을 고려 ▪ **(외부자문)**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승소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며, 법무법인은 준법지원실, 기타 자문기관은 대상자산(주식, 채권, 부동산 등)의 소관부서가 주관하여 선정

구분	주주대표소송	손해배상소송
소제기 결정	▪ **(소제기 결정)**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제기 여부 결정 ▪ **(소제기 청구)** 수탁자책임실은 준법지원실의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기업에 대하여 소제기 청구	▪ **(소제기 결정)**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제기 여부 결정
소송 수행	▪ **(소송의뢰)** 소제기 청구 이후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, 수탁자책임실은 준법지원실에 소송의뢰 ▪ **(소송대리인 선임)**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을 사전에 복수로 선정하여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즉시 선임 ▪ **(소송 수행)** 준법지원실은 대표소송에 관한 소송 제기, 소송고지, 변론, 상소 등의 제반 소송사무를 담당	▪ **(소송의뢰)** 해당 증권 등의 소관부서는 준법지원실에 소송의뢰 ▪ **(소송대리인 선임)**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을 사전에 복수로 선정하여 필요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즉시 선임 ▪ **(소송 수행)** 준법지원실은 소송 제기, 소송고지, 변론, 상소 등의 제반 소송사무를 담당

Ⅰ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

1.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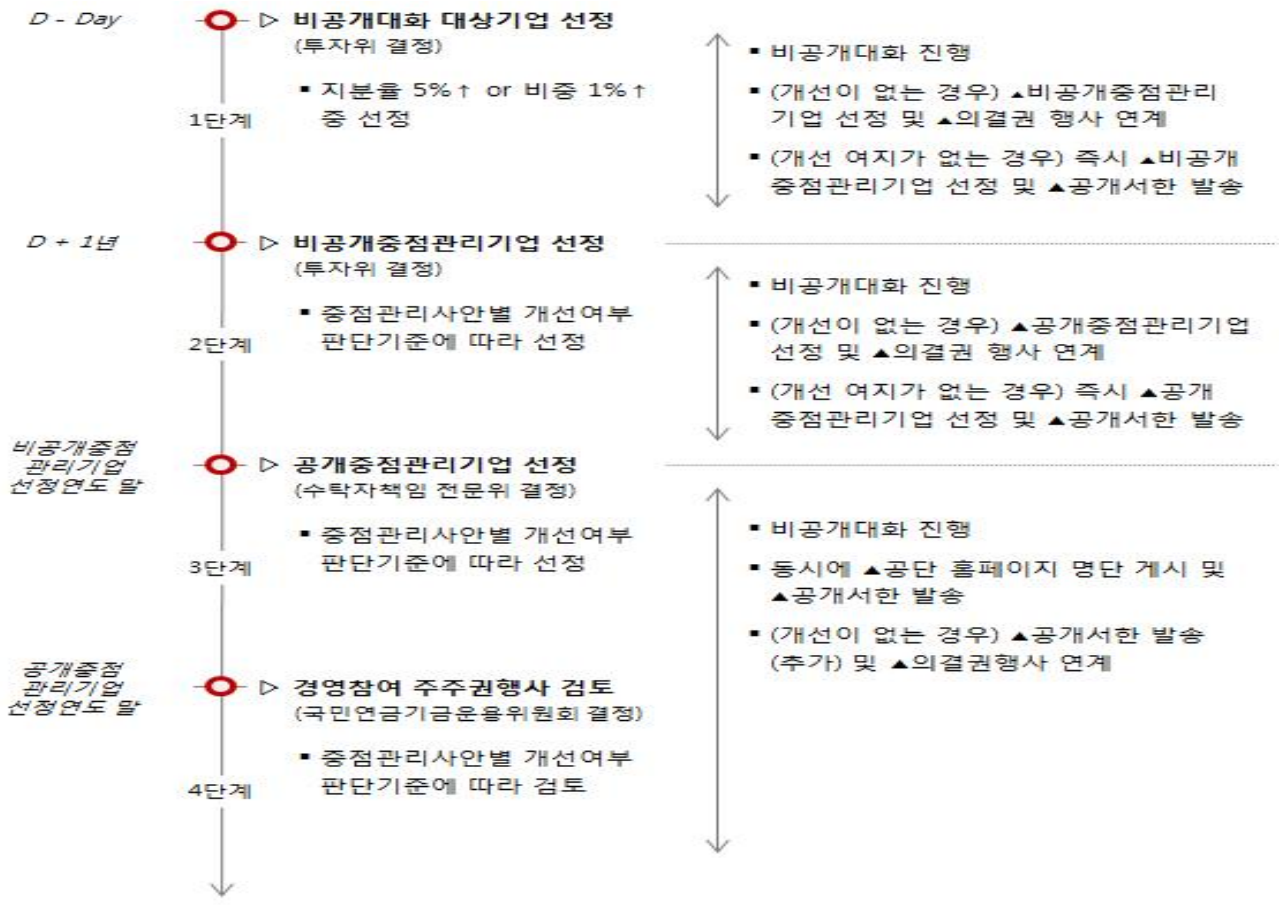
○ 투자대상 기업 관련 **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**을 통하여 **주주가치 제고** 및 **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**을 **제고**

○ **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**을 **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진**하고 이를 관리·감독하는 체계 마련

2. 실행 방안

○ **지분율 5% 이상 또는 보유비중 1% 이상 투자기업**을 대상으로

- **중점관리사안 별**로 비공개대화, 비공개·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, 공개서한 발송 등 **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**을 추진



3.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(1단계)

① 대상기업 선정

○ **(대상기업) 지분율 5% 이상 또는 보유비중 1% 이상 투자기업 중,** 중점관리사안 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**비공개대화 대상기업**을 선정

- 다만,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요구**하는 사안의 경우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선정**

○ **(선정방법) 준법지원실의 검토**를 거쳐 **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선정**하며, 해당기업에만 서면 통보

- 다만,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요구**하는 사안의 경우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상기업으로 선정**

<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>

구분	세부내역
기업의 배당정책 수립	- ①**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기업**, ②**의결권행사 대상기업 중 배당성향 하위기업**, ③**보유비중 상위 기업**으로, - **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·공개하고 있지 않거나,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***을 선정 * 당기순손실(결손 누적 포함),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기업을 제외 - **합리적인 배당정책 여부**는 **'배당정책 체크리스트***'를 기반으로 판단 * 배당정책의 투명성, 구체성, 일관성을 검토
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	-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으로서, -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, **이사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**을 고려하여 **선정**
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	- 국가기관의 조사 등 **객관적 사실에 근거**하여 ①**횡령·**②**배임,** ③**부당지원행위,** ④**경영진의 사익편취**에 해당할 **우려**로 인해 -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
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	- **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(위원) 선임의 건** 중에서 **동일한 사유 등**으로 **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**한 기업 중, -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, 안건의 중요도, 개선여지, 보유비중 등을 고려하여 **선정**

2 비공개대화

○ **(비공개서한) 기금운용본부**는 대상기업에 대하여, ▲사실관계 확인, ▲기업의 입장표명 요청, ▲현황파악을 위한 자료·정보 요청, ▲기업의 조치사항 확인, ▲개선대책 요구 등을 위한 **질의서** 또는 **의견서**를 **발송**하며,

-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의 경우,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**기업이 자율적으로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**하고,

-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의 경우, 대상기업과 **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상 반대사유**에 대한 **공감대 형성**을 추구

○ **(비공개면담)** 필요한 경우 **기금운용본부**는 대상기업과의 협의 하에 이사회, 경영진 등 **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**와 **비정기적으로 면담**을 수행하되,

- 기업 배당정책 수립의 경우, **주요 경영진**과 배당정책에 영향을 주는 **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수시**로 대화

3 후속 조치

○ **(개선여부 판단) 비공개대화를 개시**(대상기업에 대한 비공개서한 발송일 기준)한 후 **1년여가 경과한 시점**을 기준으로 **투자위원회 의결**을 통해 개선여부를 판단하며,

- 중점관리사안 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개선여부를 판단하여,

- **개선이 있었다고 판단**되는 경우 **비공개대화 종료**

○ **(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) 개선이 없는 기업**은 **투자위원회 의결**을 거쳐 **비공개중점관리기업**으로 **선정**하며,

-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**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**되는 경우, 비공개대화를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**투자위원회 의결**을 거쳐 **비공개중점관리기업**으로 **즉시 선정**

○ **(의결권행사 연계)**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**지속적으로 거부**하는 등 **개선하지 않는 경우**,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**의결권 행사 연계**

○ **(공개서한 발송)**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**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**되는 경우,

- 비공개대화를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의결**을 거쳐 **공개서한을 발송**할 수 있으며,
- 공개서한을 통해, ▲사실관계 확인, ▲기업의 입장표명 요청, ▲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·정보 요청, ▲기업의 조치사항 확인, ▲개선대책 요구, ▲이사회·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요청 등을 발송

4.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(2단계)

① 대상기업 선정

○ **(대상기업)**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중, 중점관리사안 별로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거나,

-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**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**을 **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**

○ **(선정방법) 준법지원실의 검토**를 거쳐 **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선정**하며, 해당기업에만 서면 통보

- 다만,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요구**하는 사안의 경우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**

② 비공개대화

○ **(비공개대화)** 기금운용본부는 **반기에 1회 이상 ▲비공개서한** 또는 ▲이사회,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**비공개면담**을 통해,

- 기금운용본부의 입장 전달 및 질의·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진행 경과를 확인

③ 후속 조치

○ **(개선여부 판단)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연도 말**을 기준으로 **투자위원회 의결**을 통해 **개선여부를 판단**하여,

- **개선이 있었다고 판단**되는 경우 **비공개대화 종료**

○ **(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) 개선이 없는 기업**은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**에서 **공개중점관리기업**으로 **선정**하며,

-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**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**되는 경우,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연도 말이 되지 않더라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**비공개중점관리기업**으로 **즉시 선정 가능**하며,

- 다만, 기금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시기를 조정

○ **(기타) 의결권행사 연계**와 **공개서한 발송**에 대해서는 비공개대화 단계의 기준을 준용

5.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(3단계)

① 대상기업 선정

○ **(대상기업)**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중, 중점관리사안 별로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거나,

-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**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**을 **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**

○ **(선정방법)** 공개중점관리기업은 **준법지원실의 사전검토, 투자위원회 의결**을 거쳐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의결**로 선정

-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공개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이를 **보도자료** 등의 방법으로 **즉시 공개**하고, **공단 홈페이지**에 **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을 게시**

② 비공개대화

○ **(비공개대화)** 기금운용본부는 **분기에 1회 이상 ▲비공개서한** 또는 ▲이사회,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**비공개면담**을 통해,

- 기금운용본부의 입장 전달 및 질의·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진행 경과를 확인

③ 후속 조치

○ **(개선여부 판단)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년도 말**을 기준으로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의결**을 통해 **개선여부를 판단**하여,

-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**비공개대화를 종료**하고 공단 홈페이지의 **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에서 제외**

○ **(후속조치)**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년도 말 이후에도 **개선이 없는 기업**의 경우,

-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**를 거쳐, 필요한 경우 **국민연금기금**

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**경영참여**에 해당하는 **주주권행사**

○ **(기타) 의결권행사 연계**와 **공개서한 발송**에 대해서는 비공개대화 단계의 기준을 준용

6. 주주제안(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에 한함)

○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관련 **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하여,**

- 다른 기관투자자 등 소수주주가 배당관련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단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 **선별적으로 참여**하거나,
- 직접 배당관련 **주주제안** 가능

○ 주주제안 참여 혹은 직접 수행 판단에 앞서 경영진 면담을 통해 주주제안 참여요청 접수상황 혹은 주주제안 내용 등을 설명하고,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

- 경영진 면담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, 주주제안의 내용에 대해 준법지원실과 투자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고,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의결로 행사참여 혹은 직접 수행 여부 결정

○ 기업에 대한 **주주제안 통보 및 공시는** 주주제안 참여의 경우 **참여요청 주주가,** 주주제안 직접 수행의 경우 **공단이 수행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Ⅱ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

1.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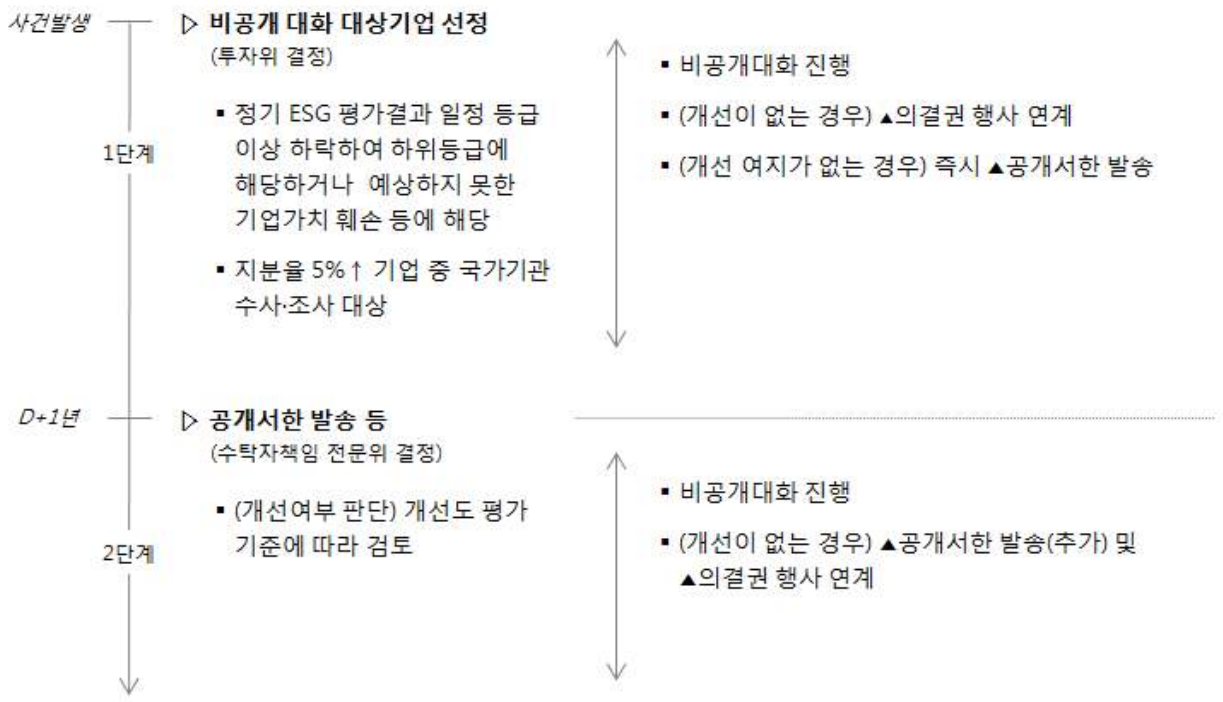
○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**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개선을 유도**하여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제고

○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, 이를 관리·감독하는 체계 마련

2. 실행 방안

○ 정기 ESG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하여 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,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, ▲정성평가, ▲비공개대화, ▲공개서한 발송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 추진

<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단계>



3. 정성 평가

① 컨트러버셜 이슈 중대성 평가

○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검찰, 경찰의 수사 착수 등 **국가기관의 조사** 및 **ESG 관련 컨트러버셜 이슈** 발생 시 **심각성** 및 **재발가능성**을 중심으로, 자산 노출도를 고려하여 해당 **이슈의 중대성 평가** 수행

- **심각성**은 **피해규모, 처벌가능성 및 수위, 피해기간 등**을 고려하고, **재발가능성**은 **의사소통 및 개선수준, 반복정도 등**을 고려하여 평가
- **자산 노출도**는 해당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**기금 보유 지분율 및 보유비중**
- 다만, 중점관리사안(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3장)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따름

② ESG등급 정성평가

○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정기 ESG평가결과, **일정 등급 이상 하락하여 하위등급에 해당**하는 경우, **자산 노출도를 고려**하여 그 **하락 사유에 대한 정성평가** 수행

- 등급하락사유에 관한 ESG평가 수행기관의 분석보고서를 참고

4. 비공개대화

① 대상기업 선정

○ (대상기업) **▲컨트러버셜 이슈 중대성 평가 점수**가 **일정 수준 이상**이거나 **▲ESG등급 정성평가** 실시 후, **투자위원회**에서 비공개대화를 실시하기로 **의결**한 기업을 대상

- 다만,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요구**하는 사안의 경우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선정**하고,

- **지분율 5% 이상**인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**국가기관의 수사·조사 착수** 사실이 인지된 경우, 시의적절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**기금운용본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서한을 발송**할 수 있음

② 비공개대화

○ **(비공개서한) 기금운용본부**는 대상기업에 대하여, ▲사실관계 확인, ▲기업의 입장표명 요청, ▲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·정보 요청, ▲기업의 조치사항 확인, ▲개선대책 요구 등을 위한 **질의서** 또는 **의견서**를 **발송**하며,

○ **(비공개면담)** 필요한 경우 **기금운용본부**는 대상기업과의 협의 하에 이사회, 경영진 등 **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**와 **비정기적으로 면담**을 수행

③ 후속조치

○ **(개선여부 판단) 비공개대화를 개시**한 후 **1년여가 경과한 시점**을 기준으로

- 개선도 평가 기준에 따라 **투자위원회**에서 **개선 여부를 판단**하여, **개선이 있었다고 판단**하는 경우 **비공개대화를 종료**

○ **(의결권행사 연계)**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**지속적으로 거부**하는 등 **개선하지 않는 자**에 대한 **이사 선임 안건**에 **반대** 의결권을 행사

○ **(공개서한 발송)**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**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**되는 경우,

- 비공개대화를 개시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의결**을 거쳐 **공개서한을 발송**할 수 있으며,

- 공개서한을 통해, ▲사실관계 확인, ▲기업의 입장표명 요청, ▲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·정보 요청, ▲기업의 조치사항 확인, ▲개선대책 요구, ▲이사회·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요청 등을 발송

○ **(후속조치)** 의결권행사 연계, 공개서한 발송 등에도 불구하고 **개선이 없는 기업**의 경우,

-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**를 거쳐, 필요한 경우 **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의결**에 따라 **경영참여**에 해당하는 **주주권행사**

Ⅲ 소송 제기

1. 기본방향

○ 투자대상 기업의 **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**에 기여를 **목적**으로 **소송을 제기**하며,

-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

○ **제소요건**이 충족되는 경우, **승소가능성**, **소송에 따른 효과 대비 비용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
- 소송 제기가 **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**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

2. 주주 대표소송

□ **대상**

○ **(이사 등)** 기금 **투자대상 기업**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**이사**를 비롯하여,

- **감사**, **업무집행관여자 등**도 대상에 포함

○ **(대상 책임) 손해배상책임** 뿐만 아니라, 이사 등이 **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**을 대상으로

-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□ **소송 제기 결정 시 고려사항**

○ **(제소요건 등) 제소요건 충족** 여부, **승소가능성**, **소송 실익**(효과 대비 비용)과 함께,

- ▲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관련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, ▲손해액이 관련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

산출 가능한지, ▲기업 자체적으로 손해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

○ **(타주주 요청) 다른 주주 등**으로부터 **대표소송 참여 요청**이 있는 경우,

- 기금의 참여가 **제소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**에 한하여 **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**하되,
- 소송 당사자로서 기금의 역할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송대리인의 선임, 소송전략의 의사결정, 서면의 제출 등 **주요 소송행위**에 대한 **기금의 참여 권한을 보장**받는 것을 전제로 대표소송 참여

○ **(외부 자문)**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**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** 외부 기관으로부터 승소가능성 등에 대한 **자문**을 받아 결정의 **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**하며,

- **법무법인**은 **준법지원실**, **기타 자문기관**은 **수탁자책임실**이 주관하여 선정하되,
- 의사결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, 법무법인의 경우 기업자문 및 소송에 **전문성 있는 법무법인** 등을 사전에 복수로 선정하여 필요에 따라 **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즉시 선임**할 수 있도록 준비

□ 모니터링

○ **(기금운용본부) 수탁자책임실**은 **언론보도**, **국가기관의 수사·조사 결과 발표**, 기업과의 **비공개대화** 등을 통해,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**모니터링**하며,

- 동시에 **외부 기관을 활용**하여 **모니터링을 보완**

○ **(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)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**는 **자체적으로 언론보도**, **국가기관의 수사·조사 결과 발표** 등을 통해,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**모니터링**하며,

- 소송 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**기금운용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**

□ **소송 제기 여부 결정**

○ **(투자위원회) 수탁자책임실**은 주주 대표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을 **투자위원회에 부의**하며,

- 제소요건 충족, 승소가능성, 소송 실익,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, 손해액 등 **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**에 대해서는 **준법지원실의 검토 내용을 반영**

○ **(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)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**하거나,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항**에 대해서는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**가 **주주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**하며,

-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요구에 따라 **기금운용본부**는 사실관계,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의견 등 **자료를 제출**

○ **(소송 제기 결정) 투자위원회** 또는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**는 제소요건 충족 여부, 승소가능성, 소송 실익,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,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**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**하며,

- 다만, 소제기 청구에 따라 **기업이**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**소송을 제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**에는 **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**

○ **(소제기 청구)**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, **수탁자책임실**은 준법지원실의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기업에 대하여 **소제기를 청구**하되,

-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회사에 **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**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**즉시 소송을 제기**

□ **소송 수행**

○ **(소송의뢰)** 소제기 청구 이후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**수탁자책임실**은 준법지원실에 **소송의뢰**를 하며,

- **준법지원실**은 제소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**투자위원회** 또는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**

○ **(소송대리인 선임) 의사결정의 시급성을 고려**하여, **소송대리인**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**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을 사전에 복수로 선정**하여 필요에 따라 **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즉시 선임**할 수 있도록 준비

-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「기금운용 소송사무 및 법률자문에 관한 지침」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름

○ **(소송 수행) 준법지원실**은 대표소송에 관한 소송 제기, 소송고지, 변론, 상소 등의 **제반 소송사무를 담당**하되,

-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른 소송 제기 건**의 경우, 상소의 포기,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·인낙, 화해 기타 법적으로 기금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**중요한 의사결정**은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름**

○ **(소송협의체) 준법지원실**은 소송전략 수립 등 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송협의체를 운영하며,

- 소송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사전에 확보

3. 손해배상소송

□ 대상

○ **(회사 등)** 기금이 투자한 **대상자산**(주식, 채권, 부동산 등)과 관련하여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**기금에 손해**를 가한 **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***

*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 및 다른 투자자도 손해배상소송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

○ **(대상 책임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**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에 대한 **투자자 소송**을 비롯하여,

- **투자자**(주주, 채권자 등)**로서 추궁**할 수 있는 **모든 손해배상책임** 대상

□ 소송 제기 결정 시 고려사항

○ **(제소요건 등) 제소요건 충족** 여부, **승소가능성**, **소송 실익**(효과 대비 비용)과 함께,

- ▲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가 관련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, ▲손해액이 관련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

○ **(외부 자문)**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**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** 외부 기관으로부터 승소가능성 등에 대한 **자문**을 받아 결정의 **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**하며,

- **법무법인**은 **준법지원실**, **기타 자문기관**은 **대상자산**(주식, 채권, 부동산 등)**의 소관부서**가 주관하여 선정하되,

- 의사결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, 법무법인의 경우 금융투자 소송에 **전문성 있는 법무법인** 등을 사전에 복수로 선정하여 필요에 따라 **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즉시 선임**할 수 있도록 준비

□ **모니터링**

○ **(기금운용본부) 대상자산**(주식, 채권, 부동산 등)**의 소관부서**는 **언론보도, 국가기관의 수사·조사 결과 발표**, 기업과의 **비공개대화** 등을 통해, 손해배상소송 제기 필요성을 **모니터링**

○ **(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)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**는 **자체적으로 언론보도, 국가기관의 수사·조사 결과 발표** 등을 통해, 손해배상소송 제기 필요성을 **모니터링**하며,

- 소송 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**기금운용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**

□ **소송 제기 여부 결정**

○ **(투자위원회) 대상자산**(주식, 채권, 부동산 등)**의 소관부서**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을 **투자위원회에 부의**하며,

- 제소요건 충족, 승소가능성, 소송 실익, 법령 또는 계약 위반행위, 손해액 등 **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**에 대해서는 **준법지원실의 검토 내용을 반영**

○ **(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)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**하거나,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항**에 대해서는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**가 **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**하며,

-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요구에 따라 **기금운용본부**는 사실관계,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의견 등 **자료를 제출**

○ **(소송 제기 결정) 투자위원회** 또는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**는 제소요건 충족, 승소가능성, 소송 실익,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,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**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**

□ **소송 수행**

○ **(소송의뢰)**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**해당 증권 등의 소관부서**는 준법지원실에 **소송의뢰**를 하며,

- **준법지원실**은 제소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**투자위원회** 또는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**

○ **(소송대리인 선임) 의사결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, 소송대리인**은 금융투자 소송과 관하여 **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등을 사전에 복수로 선정**하여 필요에 따라 **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즉시 선임**할 수 있도록 준비

-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「기금운용 소송사무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지침」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름

○ **(소송 수행) 준법지원실**은 소송 제기, 변론, 상소, 소송 취하 등**제반 소송사무를 담당**하되,

-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소 제기 건**의 경우, 상소의 포기, 소의 취하, 화해, 또는 조정 기타 법적으로 기금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**중요한 의사결정**은 **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름**

○ **(소송협의체)** 준법지원실은 소송전략 수립 등 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송협의체를 운영하며,

- 소송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사전에 확보

4. 기타

○ **(소송 예산 편성) 준법지원실**과 **기금운용본부의 각 부서**는 소송 제기 및 소송협의체를 통한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**예산 및 인력을 확보**

○ **(소송 비용 회수) 준법지원실**은 대표소송 제기에 소요된 상당한 **비용을 회사에 상환청구**하고,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**소송비용청구소송을 제기**

- 기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경우, **준법지원실**은 소송 제기에 소요된 비용을 **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**하고, 패소 **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**

Ⅳ 공시 및 보고

□ 공시

○ **(시기)** 원칙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**결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**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**공시**하되,

-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**공개 여부 및 시기**를 함께 **결정**하며,
-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, **소송 제기 결정 시**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**공시 여부 및 시기**를 함께 **결정**

○ **(내용)** 원칙적으로 **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**을 **공개**하되,

-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**일부 내용**에 대하여 **공시 여부 및 시기**를 **조정**

□ 보고

○ **(분기별 보고) 수탁자책임실**은 **분기별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**

○ **(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) 수탁자책임실**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고,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